

2단계 균형발전정책 종합보고서

2단계 균형발전정책 종합계획(안)

2007. 7. 2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목 차 >

I. 1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추진배경과 성과.....	1
II.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	4
1. 수도권 집중의 지속 / 4	
2. 심각한 지역간 발전 격차 / 6	
3. 외국의 정책사례 / 9	
III. 2단계 균형발전정책 비전과 추진전략.....	13
1. 추진경과 / 13	
2. 정책비전과 과제 / 14	
3. 추진전략 / 15	
IV.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내용.....	20
1. 기업대책 / 20	
2. 사람대책 / 29	
V. 수도권 발전대책.....	41
VI. 향후 추진계획.....	43
<부록> 지역분류 및 인센티브 차등화 외국의 사례	

I. 1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추진배경과 성과

1. 추진배경

□ 요소투입형 불균형 성장전략의 한계

- '60년대 이후 정부주도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은 '95년 이후 약 10년간 1인당 국민소득 1만불대에서 생산성 하락, 저성장, 외환 위기, 계층·지역간 격차 심화 등 한계에 직면

* 지방의 발전잠재력과 국가 전체 경쟁력 약화 및 사회통합력의 현저한 약화 초래

- 혁신주도 지역발전 및 전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통해 지역을 신성장 동력원으로 창출 필요

⇒ 혁신주도형 균형발전 전략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 수도권 과밀과 지방 침체로 인한 '고비용-저효율'의 국토구조 심화

- 수도권의 강력한 흡인력으로 인한 일극 집중현상은 생산요소 비용, 사회적 비용 등 각종 비용상승을 초래하여 수도권의 고비용 구조를 고착화

* 일정 한도(예 : 인구 735만)가 넘으면 규모와 소득 간의 역(-)의 상관관계가 발생
⇒ 서울, 멕시코 시티, 이스탄불, 도쿄 등 대상(OECD, '세계경제의 경쟁도시, 2006)

-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비용 구조를 지닌 지방자원(토지, 공항, 항만, 도로, 산업단지 등)의 활용 미흡으로 인한 '효율성 손실' 발생

⇒ 수도권의 과밀 해소 및 지방 발전을 통해 국가전체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2. 1단계 정책의 주요내용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 구축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립, 균형발전특별법 제정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정책추진 기반 마련
-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책 추진

□ 지방의 내생적 혁신역량 확충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추진

-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누리사업 및 지방 R&D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혁신역량 강화
-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집적기반을 구축하고 생산과 R&D가 조화된 혁신클러스터 육성

□ 수도권 일극 집중구조를 다핵형 국토구조로 전환

-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행정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추진
- 낙후지역 및 지역경제발전 효과가 큰 지역에 민간투자를 통한 기업도시 건설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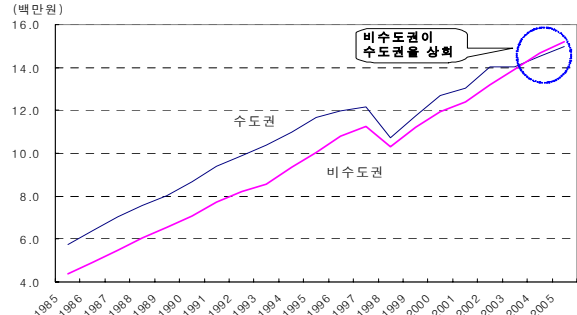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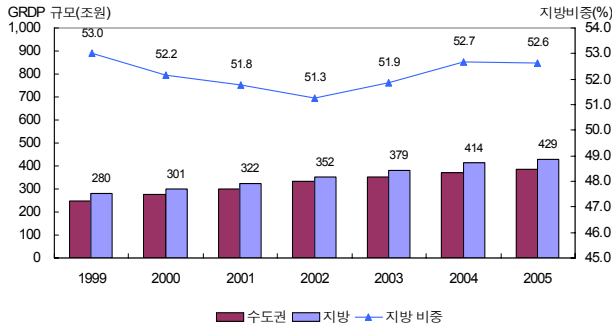
□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질적 발전으로 전환

-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및 전국 30개 시범 지역 선정
- 수도권의 질적발전과 계획적 관리를 위한 수도권발전종합대책 마련 및 관련법령 정비를 통한 선별적 규제개선 추진

3. 주요 정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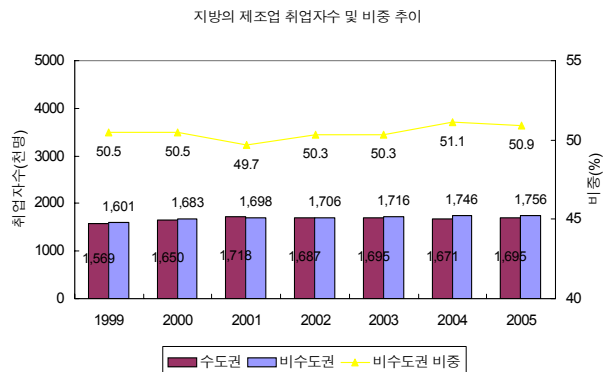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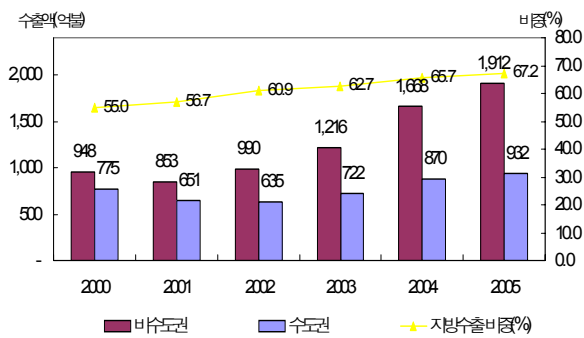
□ 지방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확대

- 국내총생산중 지방의 비중이 2003년부터 증가하여 2005년 52.6% 기록
- 1인당 GRDP도 '04년부터 지방이 수도권을 추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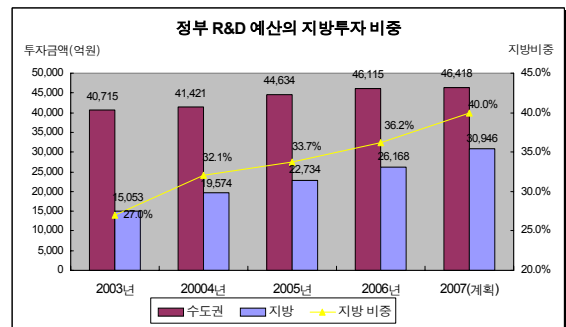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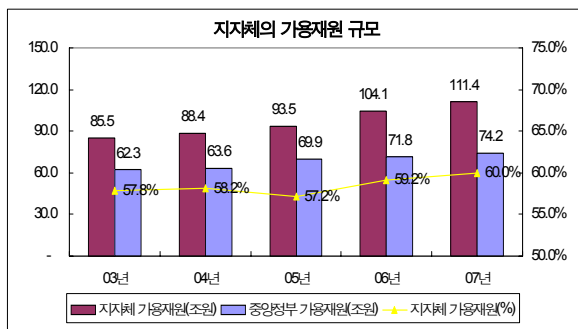
□ 지방의 제조업 고용비중 및 수출 비중의 지속적 확대

- 제조업의 지방 취업자 비중이 '03년 49.7%에서 '05년 50.9%로 증가
- 전국 대비 지방수출 비중도 상승('02년 60.5% → '05년 67.2%)



□ 지방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지방의 자율성 제고

- 지자체 가용재원 규모가 85.5조원('03)에서 111.4조원('07)으로 증가
-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을 위해 R&D예산의 지방비중 확대('03년 27%→'07년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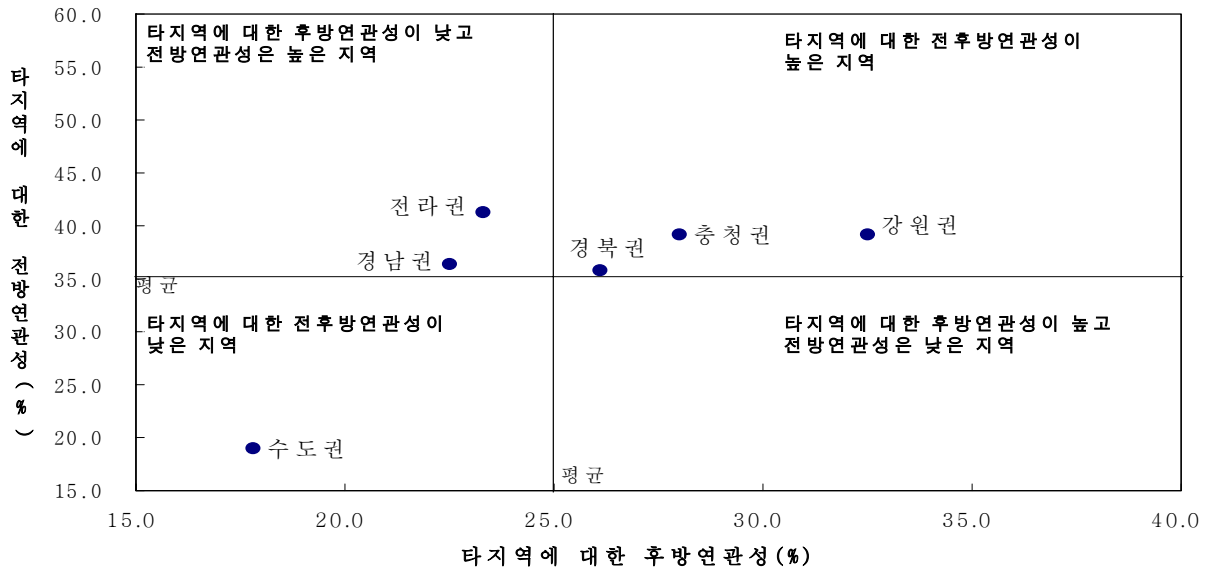


II.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

1. 수도권 집중의 지속

- 수도권의 강력한 흡인력으로 인해 산업, 경제, 공공서비스 모든 부문에서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지속
 - 중앙행정기관의 83.9%, 정부투자기관 88.5%, 정부출연기관의 75.3%, 정부출자기관의 93.8%가 수도권에 위치
 - 100대 기업의 91%, 의료기관의 51.1%, 주요대학*의 62.5%도 수도권에 집중
 - * 상해 교통대가 2006년에 발표한 글로벌 500대 대학에 포함된 국내 8개 대학중 5개 대학이 수도권에 위치
 - 예금의 67.8%, 대출의 66.7%, 소유 부동산가액의 62.5%, 국세의 49.4%를 수도권이 차지하는 등 경제적 집중이 심대
- 참여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등 강력한 분산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 그 효과가 2010~2014년 이후에 나타나 수도권 인구·산업의 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상당한 정도의 시간지체(Time Lag) 발생
- 수도권과 타 지역의 동반성장이 바람직하나 수도권은 타지역에 대한 산업간 전후방연관성이 모두 낮아, 수도권 지역의 성장은 타 지역의 취업이나 고용의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단절적 성장패턴을 가지고 있음
 - 이는 한국경제가 수도권 중심의 일극 집중적 공간구조를 통해 성장했음을 시사

< 지역별 경제구조 및 지역간 산업연관관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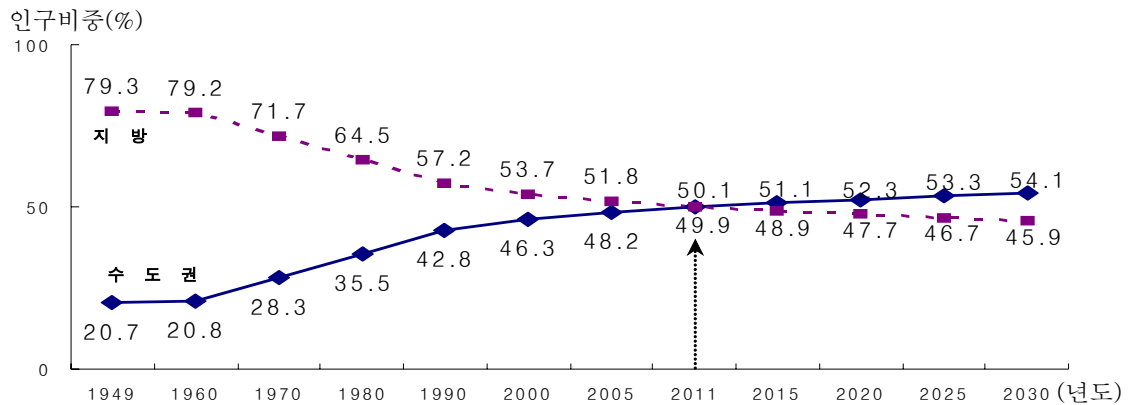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평균
타지역 후방연관성(%)	17.8	32.5	28.0	23.3	26.1	22.5	25.0
타지역 전방연관성(%)	19.0	39.2	39.2	41.3	35.8	36.4	35.2

자료 :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로 본 지역별 경제구조 및 지역간 산업연관관계」 (2007.3.20)

□ 수도권에 공공기관, 기업 등 좋은 일자리와 경제력, 교육·문화·의료기관이 집중된 결과 수도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1년에는 50.1%, 2030년에는 54.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수도권 인구비중 : ('02) 47.2% → ('05)48.3% → ('06)48.7%



* 자료 : 시도인구 추계(통계청)

2. 심각한 지역간 발전 격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 발전정도에 대한 종합적 계량분석에 의하면 수도권 집중과 함께 지역간의 심각한 격차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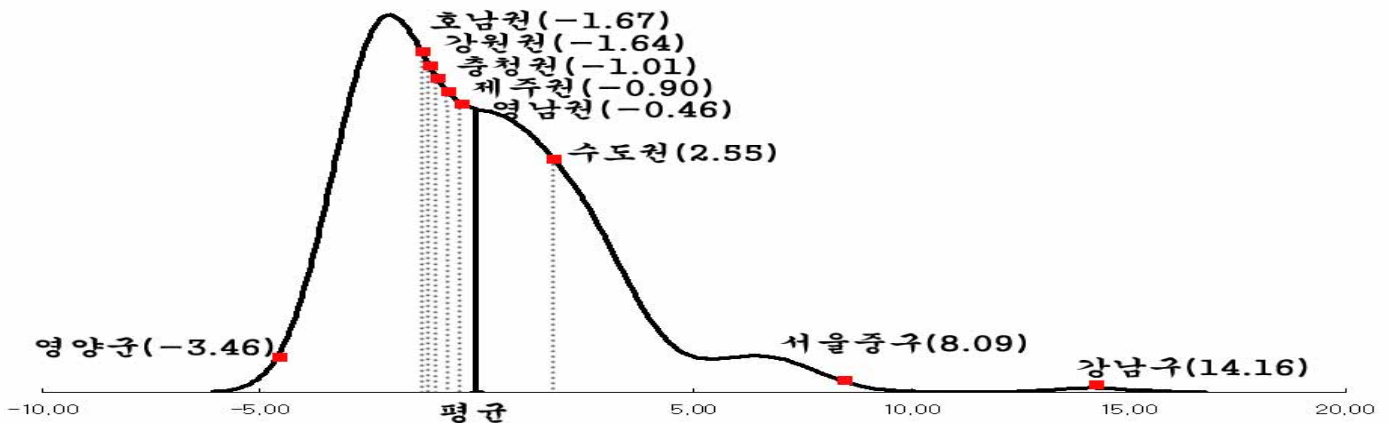
* '07.3~6월간, 인구·산업경제·재정·복지 및 인프라 등 5대 부문 14개 지표(2005년) 분석

○ 234개 기초단체의 지표별 표준값(Z-score)을 합하여 종합점수를 내고, EU의 지역분류 기준인 평균값 $\pm 25\%$ 를 기준으로 4그룹으로 분류한 결과, 수도권의 평균은 2.55이며, 지방은 모두 평균보다 낮은 마이너스 값을 보임.

구분	지역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계	
	개수	평균값	개수	평균값	개수	평균값	개수	평균값	종합평균	최소/최대
수도권	3	-2.08	7	-1.03	16	0.93	40	4.16	2.55	-2.21 / 14.16
충청권	12	-2.35	13	-1.2	5	0.42	3	2.8	-1.01	-2.98 / 2.93
강원권	11	-2.19	5	-1.22	2	0.33	-	-	-1.64	-2.54 / 0.59
영남권	22	-2.69	16	-1.01	26	0.86	8	2.47	-0.46	-3.46 / 3.45
호남권	26	-2.63	8	-0.78	6	0.57	1	2.88	-1.67	-3.17 / 2.88
제주권	-	-	3	-1.5	1	0.89	-	-	-0.90	-1.74 / 0.89
계/평균	74	-2.52	52	-1.07	56	0.79	52	3.8	-0.00	-3.46 / 14.16

□ 권역별 종합평균 점수의 정규분포를 보면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압도적으로 발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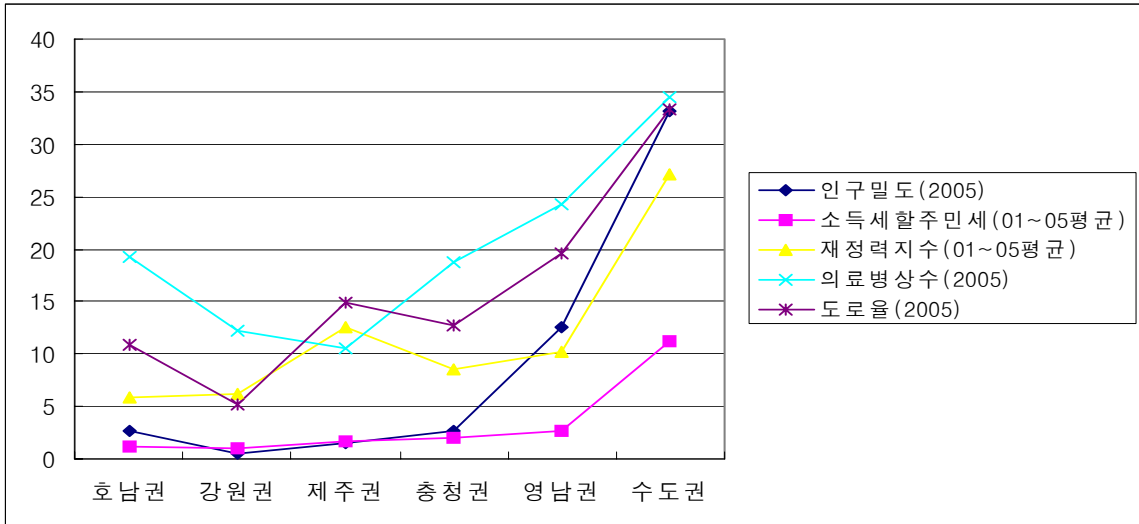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권역간 격차는 3.01~4.22로 차이가 매우 큰 반면, 비수도권 권역간 격차는 0.44~1.21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중간 연구결과('07.7월)

- 인구·소득·재정력·복지 및 인프라 등 주요지표를 비교하여도 모든 부문에서 수도권 집중 및 지역간 현격한 격차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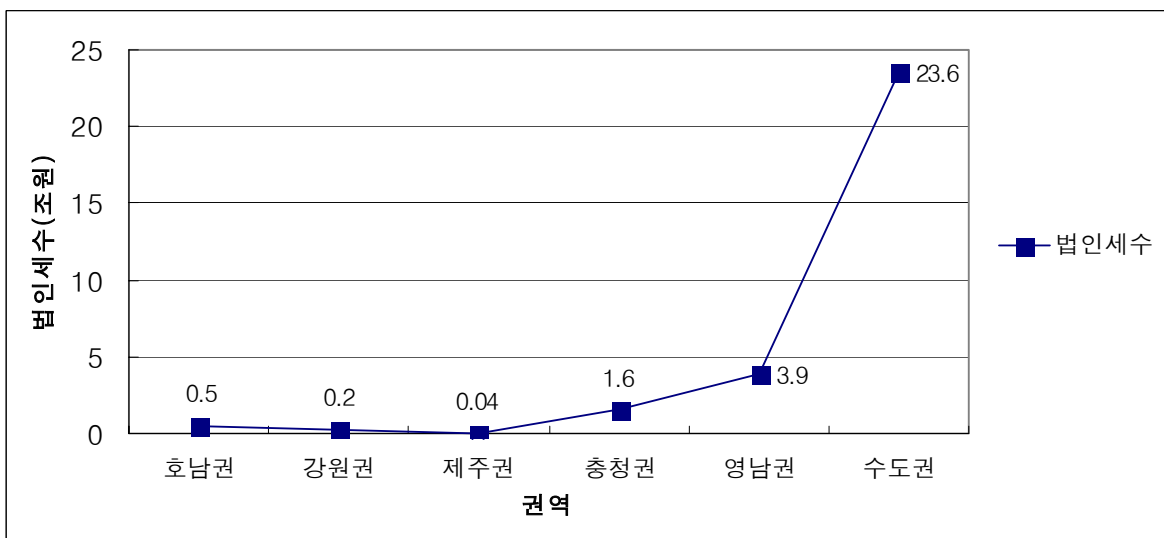
<권역별 주요 분석지표 비교>



- 법인 본사의 수도권 집중으로 법인세 규모도 지역간에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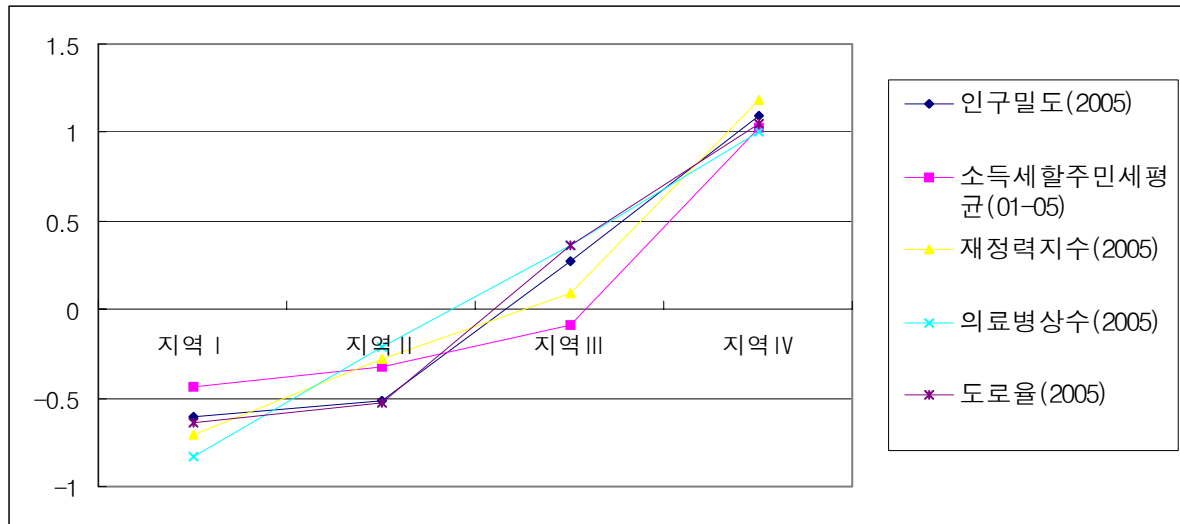
○ 법인세수('06년)의 수도권 비중은 79%

<권역별 법인세수 규모 비교>



- 5대 부문별 주요 지표를 대상으로 분류된 지역별로 비교하여 보면 지역 I (낙후지역)~ 지역IV(발전지역)간의 격차가 현저히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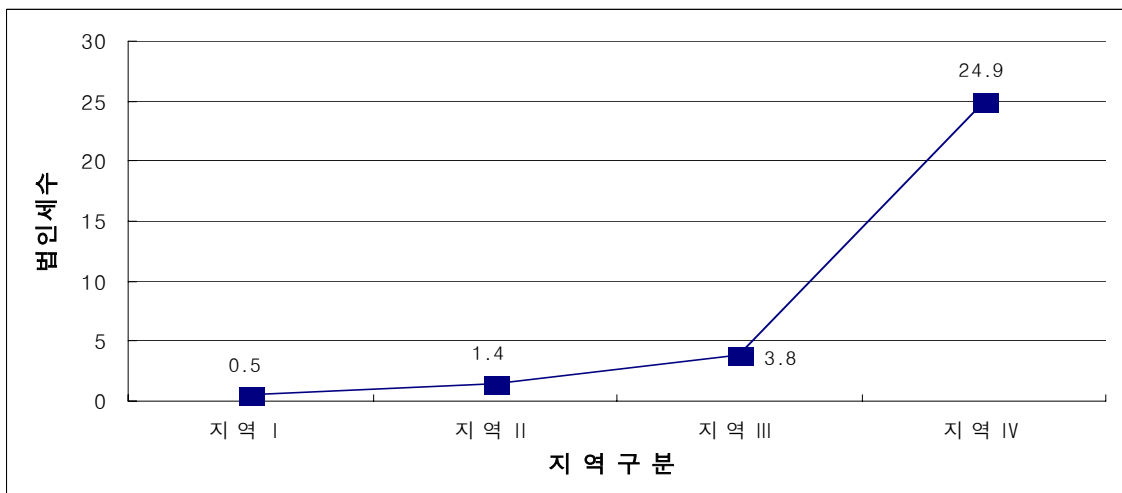
<분류지역별 주요 지표비교>



- 또한 분류지역별로 법인세수의 규모를 분석하여 보면 가장 발전된 지역IV에 법인세수가 집중

○ 법인세수('06년)의 지역IV 비중 83%

<분류지역별 법인세수 규모 비교>



3. 외국의 정책사례

- 해외 주요국들은 산업화과정에서 초래된 지역불균형 해소를 국민 통합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균형 발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특히,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지역을 분류하고 낙후지역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강력한 차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중

① EU(유럽연합)

- 회원국간/지역간 격차문제는 EU 창설 초기부터 통합유럽 구축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과제로 인식
 - * 로마조약(1957) 前文 :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균형잡힌 경제발전을 이룩하며, 경제통합을 강화”
- 역내 지역을 발전정도에 따라 구분 후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2007~2013년간 EU 전체예산의 35.7%(€3,080억)를 투입할 계획
 - * 자원 : 유럽지역개발기금, 결속기금, 유럽사회기금

② 프랑스

- 파리지역 집중에 대처하고 지역간 인구·산업·문화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60년대부터 다양한 지역개발정책 추진
- 특히, 지역분류를 이용한 정책으로 지역개발지원금(AFR)제도, 농촌재활구역(ZRR)제도를 시행
 - * AFR : 1인당소득·인구밀도·실업률을 기준으로 3개지역(낙후지역, 준낙후지역, 일시적 낙후지역)으로 나누어 기업 투자금을 차등보조
 - * ZRR : 인구감소와 경제쇠퇴로 침체된 농촌지역을 매년 선정, 고용창출기업에게 국가지원을 집중(법인세 감면 등)

③ 영국

- 영국내 낙후지역을 정책목표에 따라 3종류의 지역(Tier 1, 2, 3)으로 분류하고, 정부의 투자보조금을 차등 지원
 - * 재원 : 지역선별보조금(RSA), 잉글랜드선별투자지원금(SFIE)
 - * 2006년도 총 지원금액 : £2.3억(약 4천억원)

④ 독일

- 통일 이후 야기된 지역불균형을 감소시키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전국적으로 균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균형발전시책 추진
- 독일 전역을 6개 지역(A, B, C, D, E, 지원불필요지역)으로 분류하고, 지역별로 기업투자에 대하여 차등 보조
 - * 분류지표 : 1인당소득, 실업률 추세, 실업률 전망, 인프라 수준
 - * 지원대상 5개지역(A, B, C, D, E)의 인구수는 독일 전체인구의 36%에 이룸

⑤ 태국

- 수도권 분산 및 지방투자 촉진을 위하여 태국 전역을 3개 지역으로 분류
 - * 3개 지역 : Zone 1(수도권), Zone 2(準수도권), Zone 3(非수도권)
- Zone별로 세제(법인세, 관세)를 면제 또는 차등감면 적용
 - Zone 1 : 3년간 100% 감면
 - Zone 2 : 3~7년간 100% 감면
 - Zone 3 : 8년간 100%, 그후 5년간 50%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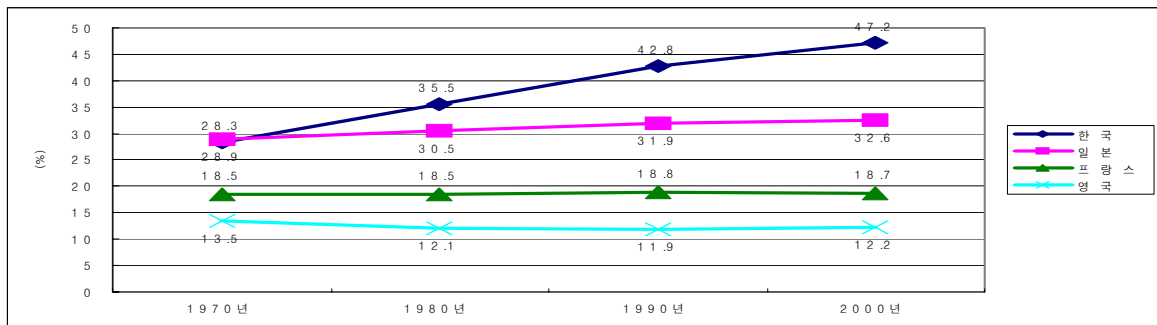
⑥ 중국

-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서부지역, 동북3성지역, 중부지역)에 대하여 균형발전 차원의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추진
 - * 서부대개발 : 인프라확충 위주로 진행(50개 프로젝트에 7,300억위안 투자예정) 국가장려업종에 대해 법인세율 인하(33%→15%)
 - * 동북3성개발 : 전략업종에 대하여 신규설비 구입시 增值稅(부가가치세와 유사) 면제 법인세 특례 적용(공제범위 확대, 가속감가상각 가능 등)

□ 외국 정책사례의 시사점

- 외국의 경우 지역분류에 따라 세제 지원을 차등화거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선택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균형발전을 위한 보편적인 제도
 -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간 발전격차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따라서 외국의 경우 보다 훨씬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세제 지원과 함께 보조금의 차등 지원을 병행할 필요
- * 수도권 집중도(2000년) : 영국 12.2, 프랑스 18.7, 일본 32.6, 한국 47.2%

< 수도권 인구비중의 국제 비교 >



- 이러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은 지역균형발전을 헌법상의 국가의무로 규정(헌법 제123조)

제120조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참고1> 외국의 지역분류 및 차등 인센티브 사례

국 가	분류기준	지역분류 유형	인센티브 차등지원
E 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발전수준 1인당 소득 실업률 지역경쟁력 입지 특성 국경접경지역 	3개 대분류 및 7개 세분류 ①균형촉진지역 · 낙후지역 · 일시적 낙후지역 · 준낙후지역 · 일시적 준낙후지역 ②경쟁력/고용촉진지역 · 순수 경쟁력/고용 촉진지역 · 일시적 경쟁력/고용촉진 지역 ③국경지역간협력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류지역별로 우선지원 분야를 정하여 지원 ①지역에 EU지역개발예산의 82%, ②지역에 15%, ③지역에 3% 를 지원
프랑스	<AFR(지역활성화)> · 1인당 소득 · 인구밀도 · 노동력실업률 등	①낙후지역 ②준낙후지역 ③일시적 낙후지역	①지역 : 투자금의 최대 80%까지 보조 ②지역 : 투자금의 최대 40%까지 보조 ③지역 : 투자금의 최대 15%까지 보조
	<ZRR(농촌재활)> · 인구밀도 · 경제활동참여인구 · 농업종사인구비율	ZRR(농촌재활지역)에 속하는 코윈 리스트를 매년 선정하고, 리스트를 1년마다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인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14년간 전체/부분면제 노동자는 사회보장부담금 경감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소득 실업률 사회보장수혜율 제조업 의존도 	①Tier 1 : 1인당소득이 EU평균의 75%이하지역 ②Tier 2 : 경제활동촉진 지역 ③Tier 3 : 구조조정지역 (과거탄광지역 등)	①지역 : 투자기업규모에 따라 차등보조(30~50%) ②지역 : 투자기업 규모에 따라 10~45% 보조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실업률(50%) 실업률 전망(5%) 1인당 소득(40%) 인프라수준(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테고리 A 카테고리 B 카테고리 C 카테고리 D 카테고리 E 지원 불필요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로 투자비용 보조 차등지원 카테고리 A지역(구동독지역)의 경우 투자기업에 별도 세금감면
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소득 지역 인프라수준 투자자 편의 (금융조달, 노동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Zone 1 Zone 2 Zone 3 ※ Zone 3는 다시 2개그룹으로 세분, 인센티브 차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감면기간 차등 적용(3~8년) 교통·전기·수도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차등적용
중 국	-	①서부대개발 지역 ②동북3성 지역 ③중부낙후지역	①지역 : 국가장려업종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10년간 감면 (33%→15%) ②지역 : 증치세(增值稅:부가가치세와 유사), 법인세 등 감면/특례 적용

Ⅲ. 2단계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1. 추진경과

대통령님 말씀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금 차등부과 및 교육·복지·보육분야의 획기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06.9.19 / 10.17)
- 기업이 지방에 오는 것이 유리하도록 확실한 2단계 지역균형정책을 개발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함('06.11.29, 누리사업보고회)
- 지역발전 및 자생력 정도를 감안하여 법인·소득세의 차등화, 복지·보육에 재정지원 강화 등 획기적 정책수단을 검토('06.11.2, 제3기 균형위 출범시)
- 참여정부 임기 동안 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다듬어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할 것임. 균형위와 각 부처는 계획을 짤 때 지속성, 규제완화, 신속한 문제해결이 되도록 유의('07.2.7, 2단계정책 대국민보고회)

- 2단계 구상 대통령 최초 제안(목포대, '06.11.29)
- 2단계 구상 대국민보고회(안동, 07.2.7)
- 2단계 정책과제 부처협의 및 종합계획 수립(07.2~6.20)
 - 전경련, 벤처기업협회 등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07.3~)
 - 「지역 순회설명회」 개최('07.3.30~)
 - 지역발전 정도에 따른 지역분류 방안 마련('07.3~)
 - 2단계 정책 종합계획(안) 관계장관회의(07.4월)
- 2단계 균형발전정책 종합계획안 대통령 보고('07.4월, 7월)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07.7.24)

2. 정책비전과 과제

정책
비전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

추진
전략

지방에 획기적인 투자유인 제공

정책
부문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살기좋은 생활여건 조성

정책
과제

- 1 법인세 부담의 대폭 경감
- 2 인력난 해소
- 3 산업용지 공급 확대
- 4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 5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
- 6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
- 7 지방이전 투자기업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 1 고품질 주택 공급
- 2 지방 초·중등 교육의 수월성 제고
- 3 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
- 4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
- 5 지역 선도도시의 교육·문화·의료·복지 인프라 확충
- 6 지방의 사회개발투자 확대
- 7 지방재정 배분시 낙후도 반영 확대

1단계
정책

다핵형 국토공간 형성

- 행정중심복합도시
-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 경제기반 강화

- 지역혁신체계 구축
- 지역 R&D역량 강화
- 지역전략산업 육성

3. 추진전략

① 민간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발전 동력 확충

- 1단계 균형발전정책에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혁신·기업 도시 건설 등 정부 및 공공부문 중심의 다핵형 국토공간 조성을 위한 분산정책에 역점을 두어 추진
- 2단계 정책은 참여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 온 다핵형 국토공간 조성, 지역경제 기반 강화를 토대로 민간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발전동력 확충에 중점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결합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여 실질적인 지역발전 동력을 확실하게 확보

② 지방투자 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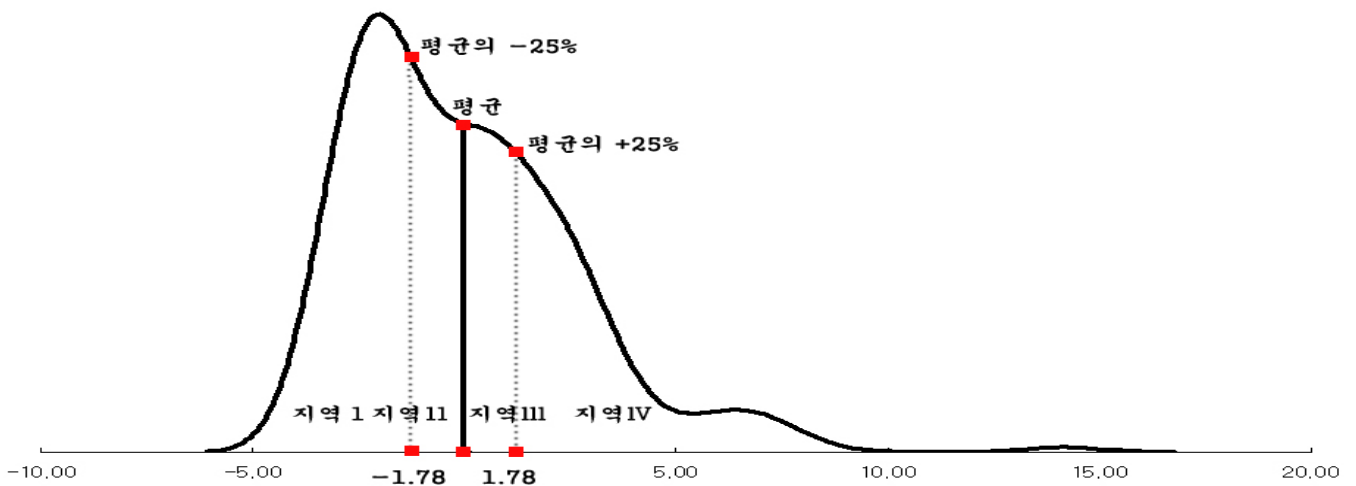
-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투자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 산업용지 공급, 인력난 등 기업의 지방투자 애로사항 해소
 - 법인세 부담 경감 및 지방투자 기업에 도시개발권 부여, 출충제 예외 등 인센티브 제공
 - 혁신·기업도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등의 집중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거점 마련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등 기업지원시스템 개선
 - 이전기업 지원 전담TF 운영, 산업용지 등 규제절차 일괄 처리 등 포괄적 지원대책 강구

③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 병행 추진

-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종사자가 지방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개선이 시급
 - 지방이전 기업 종사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교육·의료 인프라를 개선하여 쾌적하고 매력있는 생활여건 마련
 -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 대도시·중소 도시를 주요 거점으로 시군·농촌마을과 연계된 공공서비스 기반을 확충

④ 종합적·객관적 지역분류와 인센티브 차등 지원

-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지역발전 정도를 측정하여 지역을 분류
 - 인구·경제력·재정력 등 기초단체의 5대 부문 지표의 표준값(Z-score)를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EU의 지역구분 방식인 평균값 $\pm 25\%$ 를 기준으로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전국을 4개 그룹으로 분류



구 분	지역 I (낙후지역)	지역 II (정체지역)	지역 III (성장지역)	지역 IV (발전지역)
기초단체 수	74개	52개	56개	52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중간 연구결과('07.7월)

- 최종 지역분류는 계량적 분석결과에 따른 지역발전 정도의 차이와 수도권과의 거리 요인 등을 추가하여 지역분류 등급을 조정
 - 수도권은 과잉 집적이 고도로 진행되는 지역이며,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매우 크므로 지역Ⅱ·Ⅲ·Ⅳ는 지역Ⅳ(발전지역)으로 분류
 - 다만, 수도권 중 지역Ⅰ(낙후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지역Ⅲ으로 분류하여 법인세 감면 등 적용
 - 비수도권은 평균값이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마이너스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서울과의 거리(150km)를 감안하여 지역분류 등급을 조정
 - 충청권, 강원권 영동지역은 수도권과의 거리를 감안하여 지역Ⅳ에 해당하는 기초단체를 지역Ⅲ으로 분류
 - 호남권, 영남권의 수도권과의 거리를 감안하여 지역Ⅳ에 해당하는 기초단체를 지역Ⅲ으로, 지역Ⅲ은 지역Ⅱ로 하향 조정
 - 제주권의 지역Ⅲ은 지역Ⅱ로 낮추어 단일지역으로 분류
 - 비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자치구별로 등급차가 나는 경우 조세 체계상 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광역시 평균점수에 따라 단일지역으로 분류
- 지역발전 정도에 따른 지역분류 및 고용규모 등에 따라 법인세 감면 등 정부정책을 차등 지원
 - ※ 지역분류 시안은 기초데이터 확인 및 분류방식·기준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되, 제도화 단계에서 정책과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정책부서가 그 적정성을 검토후 보완하여 시행하고 지역분류는 5년을 주기로 하여 실시

<참고2> 지역분류 조정안

구분	지역 I (낙후지역)	지역 II (정체지역)	지역 III (성장지역)	지역 IV (발전지역)
합계	71	51	49	63
수도권 (66)	강화군 화진군 연천군 (3)	종구(인천) 동두천시 안성시 양주시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7)	강북구 북구 도봉구 노원구 영등포구(인천) 동남구(인천) 계양구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의왕시 파주시 이천시 김포시 여주군 (16)	중구(서울) 로구(서울) 성동구 성북구 성진구 대문구 종로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서울)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남구 강파구
충청권 (33)	보은군 영동구 괴산군 단양군 진천군 영양군	서천군 양성군 예산군 안동군	충주시 제천시 원산시 영천군 진천군 보은군 영양군	아산시 계룡시 청주시 천안시 (4)
강원권 (18)	삼척시 속초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강원권) (11)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홍천군 (5)	춘천시 주천시 (2)
호남권 (41)	남원시 김제시 부안군 진안군 무주군 고부군 고령군 고창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해운대읍 영광군 장흥군 완주군 진안군 (26)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수원시 순창군 익산시 포항시 광양시 (9)	전주시 (1)
영남권 (72)	주성군 경주시 의성군 상주군 영양군 영덕군 영천군 성주군 영양군	분천군 화진군 영월군 고성군 하안군 산하군 거창군 (22)	영도군 경주시 기동군 김천군 영양군 영천군 영덕군 영성군	포항시 구미시 창원시 김해시 (4)
제주(4)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제주시(4)	
비수도권 광역시(5)			광주시, 대전시, 부산시, 울산시, 대구시(35)	

IV.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의 내용

1. 기업대책 :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1. 법인세 부담 대폭 경감

2단계 정책구상 주요 보고내용

- 지방 창업·이전, 사업 운영시 법인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면대상의 최저한세율 적용 제외

□ 지방기업에 법인세를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 감면하고, 감면 대상의 최저한세율 적용을 배제

- 중소기업 : 이전·창업·운영 기업 모두 기간 제한없이 감면
- 대기업 : 이전 기업은 15년, 창업 기업은 10년간 감면

	현행	2단계안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 4년 50% 감면 • 이전 : 5년 100%, 2년 50% 감면 • 운영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08년말限) • 수도권 10~20%, 지방 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이전·운영 통합 • 지역별로 차등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I : 70%, 지역 II : 50% · 지역 III : 30%, 지역 IV : 0%
<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시 최초 5년 100%, 이후 2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10년: 70%·50%·30% 감면 · 이후 5년: 35%·25%·15% 감면 • 창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7년: 70%·50%·30% 감면 · 이후 3년: 35%·25%·15% 감면

□ 지방이전 기업의 기존 부지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유지 및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기간 연장(3년거치 3년→5년거치 5년 분할과세)

□ **세수감소 예상규모**

(단위 : 조원)

	합계	중소기업	일반기업 (대기업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세입감소(조원) - 법인세 - 사업소득세 	1.0	0.9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 사업소득세 	0.6	0.5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소득세 	0.4	0.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세입감소 - 주민세(국세 10%) - 지방교부세(국세 19.2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 20.0%) 	0.5	0.45	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세(국세 10%) - 지방교부세(국세 19.2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 20.0%) 	0.1	0.09	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 20.0%) 	0.2	0.18	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 20.0%) 	0.2	0.18	0.02
합 계	1.5	1.35	0.15

* 일반기업(제조업은 종업원 300인 이상, 자본금 80억원 이상) 1% 이전시 감소 : 1,000억원
 = 5억 2,000만원(일반기업 평균법인세) × 50%(감면율) × 400(업체수)

□ **세수감소 보전 대책**

- 최근 세수 증가로 중기재정계획상의 예상치보다 세입 증가
- 일몰 도래 제도('07년 18개)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축소
- 세원 투명화 노력
- 기존 재정사업의 구조조정 및 경상경비 절감 편성 등

2. 인력난 해소

2단계 정책구상 주요 보고내용

- 지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 외국인 근로자를 지방기업에 집중 지원
- 지방기업의 주문형 인력 양성제도 도입 및 기술인력 지원

① 지방 중소기업의 전문 기술인력 확보 지원

-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확보 및 전문가 심화교육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대폭 확대(고용기금)
 - 산업체 퇴직자, 퇴직과학자 등 석·박사급 연구인력 등을 중소기업의 고급 연구인력으로 적극 활용
 - 지방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대학·연구소 위탁교육 지원
 - 자연계 대체복무 전문연구요원 지방업체 배정 단계적 확대(30→50%)
- 지방 중소기업의 자체 R&D 역량 강화 지원
 - 지역혁신센터(RIC)내 중소기업의 연구 전문인력·장비 등 지원

③ 지방기업의 주문형 인력 양성제도 도입

- 지역기업이 요구하는 교육훈련 수요에 맞추어 계약형 학과 등 지방대학 전용 주문형 인력 집중 육성
 - 교육부와 산자부가 MOU 체결하여 공동 추진
 - 지원대상 : 대학 25개, 전문대학 15개
 - 지원규모
 - 대학 : ('07년) 13개 440억 → ('09) 25개 700억
 - 전문대학 : ('07년) 10개 80억 → ('09) 15개 300억

③ 외국인 근로자를 지방기업에 집중 지원

□ 지방기업에 외국인 고용한도를 현행보다 20% 추가 허용하고, 지방이전기업이 외국인 고용 신청시 우선 배정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既 조치('07.3.2부터 시행)

□ 지방기업의 외국인 고용업종 확대는 내국인 고용 피해를 감안하여 추진방안을 마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상정('08년 상반기)

* 현 외국인력 허용업종(6개) : ①제조업 ②건설업 ③농축산업 ④연근해어업 ⑤양식 어업 ⑥일부 서비스업(냉장·냉동창고업,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④ 지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 현재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각종 보조금 제공

* 기업이전보조금 :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 기존의 지방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이 미흡

□ 기존 지방기업이 신규투자로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경우 보조금 지원 제도 도입

○ 지방소재 기업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이내 보조(지급기간 : 2년이내)

○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지자체 분담율 차등화(10~30%)

<지원대상 및 지급 조건>

▪ 지원대상 업종	▪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지급조건 (제조업의 경우)	▪ 소기업 : 5억원 이상 투자, 1명이상 신규 고용 ▪ 중기업 : 10억원 이상 투자, 5명이상 신규 고용 ▪ 대기업 : 20억원 이상 투자, 20명이상 신규 고용
▪ 지급액 및 기간	▪ 2년간 월 50만원 이내
▪ 지자체 분담	▪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차등분담 (10%, 20%, 30%)

3. 산업용지 공급 확대

2단계 정책구상 주요 보고내용

- 산업단지 공급 애로지역에 공공임대산업단지 공급 확대
- 혁신·기업도시에 초저가·초장기 임대산업단지 공급 확대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산업용지 공급 특례제도 도입

① 공공임대산업단지 공급 확대

- 330만m² 규모의 공공 임대산업단지 공급('08~'17년)
 - '07.10월까지 임대산업단지 공급계획을 확정하여 '08년부터 연간 33만m² 규모의 임대산업단지 지속 공급
 - * 국가·지방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연차별 임대산업단지 공급계획 확정('07.10월)

② 초장기·초저가 임대산업단지 공급

- 혁신도시내 산·학·연 용지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조성·공급
 - 혁신도시(9개) 개발계획에서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157만m² 중 50%인 79만m²(도시별 2.6~16만m²)을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
 - '09년부터 초장기(예 : 50년), 초저가 (예 : 연간 임대료가 조성원가의 1% 미만 수준) 산업용지 공급
 -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관련 최첨단 기업·연구소를 유치하여 「혁신형 산업클러스터」 조성

③ 지방이전기업 등에 대한 산업용지 공급 특례제도 도입

- 수도권 소재 기업(기업군)이 지방으로 이전 또는 신규 투자하는 경우 인센티브·특례 지원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개정, 지방이전기업 전용단지 개발 및 이전 촉진 인센티브·특례 제도화('07.9월 개정안 국회 제출)
 - 농지 또는 산지 전용 및 사전환경성 검토 등에 관한 입지 규제심사에 대한 Fast Track 제도 등 도입
 - * 긴급한 산업용지 공급방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별도 대책 강구 (그린벨트, 수자원 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 국무총리 산하에 「이전기업 애로해소위원회」를 두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제 구축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위원 : 관계부처 차관 및 시·도지사
 - 주요 임무
 -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사항
 - 이전기업 전용단지 조성 및 부지관련 인허가 규제 일괄처리 조정
 - 이전기업 전용단지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과 시설 우선 지원
 -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신속한 지정을 위한 부처간 협조 및 의견조정 등

4.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2단계 정책구상 주요 보고내용

-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외국인기업 투자 유치
-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를 통해 내외국인 지방투자 확대

①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 지난 3년간의 경제자유구역 추진성과를 평가 하고 신규 지정 시기 및 지정요건·기준 등 마련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예정
- '07년 하반기중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받아 추가 지정 추진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상정 심의 등

②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 경제적 타당성, 지자체의 재정 부담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개 지역을 선정('08년 상반기)
- * 지역발전 정도에 따른 지역분류 결과를 감안하여 개발비에 대한 지자체 재정부담을 차등화(지자체가 총사업비의 25%~50% 부담)

5.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

2단계 정책구상 주요 보고내용

-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기업이 지방이전시 도시개발권 부여
- 일정 요건의 지방이전 기업 등이 개발하는 기업도시 유형 신설
 - 수도권에 일정기간 입지한 기업으로 본사이전 및 공장 신설에 따라 이전하는 종업원 수가 일정규모(예 : 1,000명) 이상 기업
 -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에 있는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추가 고용되는 종사자가 일정규모(예 : 1,000명) 이상 기업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방으로 공동 이전·투자하는 기업군
- 최소 개발규모를 현행(330만㎡)보다 낮추고, 이전 종업원 규모에 따라 도시개발 규모를 차등화
 - (예시) 1,000명 ~ 2,000명 → 100만㎡ ~ 165만㎡
 - 2,000명 ~ 3,000명 → 100만㎡ ~ 231만㎡
 - 3,000명 이상 → 100만㎡ ~ 330만㎡
- 시행자의 주된 용지 확보 및 직접 사용 의무비율 등을 적정하게 설정
 - * 전문기관 연구용역으로 유형신설 방안 및 적정 개발면적 등을 검토한 후 도시개발법 및 기업도시특별법 개정('07.9월경)

6. 대기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

2단계 정책구상 주요 보고내용

- 지방투자 목적의 출자에 대한 출총제 예외 인정
-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기업이 지방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한도 규제의 예외 허용
 - *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07.6.22)

7. 지방이전 · 투자기업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2단계 정책구상 주요 보고내용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기업 경영환경 및 종업원 생활여건을 포괄하는 맞춤형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① 지방이전/투자 종합지원창구 개설 및 One-Stop 애로해소

- 산업자원부에 「지방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개설, One-Stop 지원
 - 지방이전/투자 지원제도 종합상담 및 복합민원 처리
 - 이전/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전담 T/F를 구성하여 행정 지원
 - 일정규모 이상 기업(기업군)이 해당지자체와 지방이전(투자)협약 체결시, 별도의 전담 T/F 구성 및 행정지원
- * 농지 · 산림 등 각종 인허가 규제사항의 신속처리, 인프라 시설 · 종업원 등에 대해 정부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

② 기업의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 확대

- 지방 이전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현행 이전보조금의 지급대상 확대 및 지원비율 차등화

	현 행	2단계 정책안
지원대상	상시고용규모 50인 이상인 기업	상시고용규모 30인 이상 기업
지원비율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금의 50% 부담 단, 낙후지역은 국가 80%부담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국가가 50%, 60%, 70%, 80% 부담

2. 사람대책 : 살기좋은 생활여건 조성

1. 고품질 주택 공급

2단계 정책구상 주요 보고내용

- 지방이전 기업 종사자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분양 제도 도입
- 지방이전 기업 종사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제도 도입
- 지방이전 기업의 종업원용 전원마을 조성 지원 등

① 공공주택 특별분양제도 도입

-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 청약통장 가입,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지역 민영주택의 10% 범위내에서 특별 공급('07.9월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지방이전으로 인한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간 연장(2년→5년)

② 종업원용 임대주택 공급제도 도입

- 지방이전 기업의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 20호 이상의 국민주택규모(85㎡이하)에 대해 장기 저리 용자 (3~4%, 10년 거치 20년 상환)
 - 지원한도 : 전용면적 60㎡이하 55백만원, 60~85㎡ 75백만원

③ 종업원용 전원마을 조성 등 지원

- 지방이전기업을의 종업원용 전원마을 조성 지원
 - 전원마을 주택건축비 용자 확대(150㎡이하, 3%수준, 80백만원/호당)
 - 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 * 농촌주택 양도세 면세기준도 완화(0.7→1.5억원)

2. 지방 초중등 교육의 수월성 제고

2단계 정책구상 주요 보고내용

- 지역의 초·중학교를 「지역 복지거점학교」로 육성
- 「방과후 학교제도」의 교육품질 향상 지원
- 지역의 우수학교 육성

① 지역의 초중학교를 지역 복지거점학교로 육성

- 지역거점 초·중학교(1,060개)를 선정하여 지역복지 거점으로 육성
 - 예체능 전문인력·원어민교사 지원, 주말 학습·보호기능 강화, 주민대상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
 - 농어촌 지역 : 소규모 통폐합학교 우선 지원(시·군당 2개)
 - 중소도시 : 기초생보자 가정 밀집지역 학교(도시당 2개 내외)

② 방과후 학교제도의 교육품질 향상 지원

- 지방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충원율 제고(27.6%→50%)
 -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충원율('07.4월) : 수도권 41.2%, 지방 27.6%
-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위탁 및 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 '10년까지 학생참여율 60% 수준 달성('07년 45%)

③ 지방 우수고교 육성

□ 지역거점 도시에 41개의 개방형 자율학교 지정

- 교장 공모제, 학교운영(교육과정, 교원인사, 예산 등)의 자율권 확대, 운영비 및 기숙사 신·증축 등 지원
- 세종시·혁신·기업도시 등 균형발전 선도도시(15개) 및 지방 거점도시(26개) 우선 추진

□ 혁신·기업도시와 연계하여 특성화 전문계고(25개) 육성

- '09년부터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11개 시·도에 2개교씩 지정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재정 지원

□ 농어촌 1군 1우수고교 육성

- 농산어촌(88군, 52도농복합시) 우수고를 '07년 86개에서 140개로 확대하여 육성
- 어학실, 멀티학습실, 온라인 교육 등 유비쿼터스 학습환경 조성 및 원어민 보조교사, 교육과정 개선 등 지원

3. 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

2단계 정책구상 주요 보고내용

- 지방대학에 진학하는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는 신개념의 현대적 기숙사 확충 지원
- 지방대학 기부금 납부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국가 출연연구기관과 지방대학의 전략적 제휴 추진

① 지방대학 장학금 지원 확대

- 이공계 장학금의 지방대학생 지원 비율 확대(49%→65%)
 - 지방대학의 장학금 지원기준 완화(수능 2등급→수리영역 3등급)
 - 지급대상 확대(8,000명)와 함께 선발기준별 등록금 차등 지급
- 인문사회계열 지방대학 학생에 대한 장학제도 신설
 - 학과성적 우수자 등(연간 2,50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 지방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제도 신설

※ 장학생 선발의 구체적 기준은 관계부처와 협의 결정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교육부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07.6.26)과 연계 추진

② 지방대학의 현대적 기숙사 및 학생전용 임대주택 지원

□ 국립대 기숙사는 기 추진중인 BTL사업으로 단계적 확충

* 국립대 기숙사 목표수용율 : '06년 12.1%→ '10 : 21.6%

□ 사립대의 경우 학생전용 임대주택 건립 지원제도 신설

○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학생전용 임대주택 건설 자금 지원

▪ 20호 이상 건립하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에 준하여 지원(55~75백만원/호당, 이자 3~4%, 10년거치 20년 상환)

▪ 취향에 맞춰 임대주택 유형 다양화 : 개인형 · 가족형 · 공동형

* 현재 사립대 기숙사 건립은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4% 수준) 지원

□ 기숙사 및 학생전용 임대주택 건설시 주택건설기준 · 공급방법 등 규제 완화(주차시설, 놀이터, 청약제도 미적용 등) 및 부담금 경감 등

③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지방대학에 대한 기업의 특정 기부행위에 대해 세액 공제

○ 연구개발설비 기부금은 연구개발 설비투자세액 공제에 포함하고, 맞춤형 교육비용은 R&D 세액 공제에 추가 지원('07.9월, 조특법 개정)

※ 현행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개인은 소득의 100%, 법인은 75%의 범위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④ 국가출연연구기관-지방대학간 전략적 제휴 지원

- 국가출연연-지방대학-산업체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발전의 중추적 싱크탱크 역할 수행
 - 출연연의 핵심연구 성과와 지방대 연구 공유를 통해 지역산업 육성
 -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R&D 강화
 - 인적교류 제도화, 맞춤형 교육, 주요 연구성과 DB구축을 통한 정보 공유 등을 주요 협력사업으로 추진
 - * 출연연-지방대학-기업체 연계 시스템 구축
 - 지방대학 또는 출연연구기관 주관으로 「전략적 제휴」에 대한 공모사업 추진
 - 출연연-지방대-산업체간 포괄적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추진
 - * 일정기간(예 : 3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목표 미달사업 지원 중단

⑤ 지역 특화분야 연구개발 선도대학 육성사업

- 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단」 지원
 - 수도권에 비해 현격하게 뒤떨어진 지방대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지방대 특화사업분야에 집중 투자
 - 국가, 지자체, 민간 수요를 반영한 산학연 협동연구체계 구축
 -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특성화 「사업단」 공모사업 추진
 - * 지방대학·정부(필요시 지자체·민간기업)간 성과목표 협약 체결
 - 사업규모 : 40개 내외 사업단(이공계 25, 인문사회계 15), 연간 460억원 내외
 - * 13개 권역별 1개이상 사업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분야
 - 국가수요(70%) : 10대 성장동력사업, 21개 서비스분야, 지역전략산업
 - 대학자체 수요(30%) :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 인문사회분야 등
 - * 국내우수학생 유치, 우수외국 Inbound 유학생 및 교원 유치, 수도권 대학과 교류 지원 등

4.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

2단계 정책구상 주요 보고내용

- 지역주민 건강관리체계 구축사업 추진
- 농어촌 지역보건소를 1차 「지역의료건강센터」로 기능 발전·강화
- 지방의료원을 2차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중점 육성
- 지방 국립대학병원을 특화 육성

① 지역 주민 건강관리체계 구축사업 추진

- 지역주민 건강정보 DB화 및 관리체계 구축
 - 보건소·지방의료원·민간병의원에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 등록관리 및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건강관리서비스와 연계하여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
 - * 방문보건인력 확충 : '07년 2,000명 → '09년 5,000명

② 지역보건소를 1차 「지역의료건강센터」로 발전·강화

-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지원 센터로의 기능 개편(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재활보건, 방문보건 등)
- 지역보건소의 시설·장비 확충
 - 도시지역 미충족 의료서비스 해소를 위해 도시형 보건지소를 단계적으로 확충(지방 중소도시 95개소)
 - * 도시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 및 지리적 접근성 보장
 - 농촌지역 보건기관의 통폐합 및 노후시설 현대화를 통한 보건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지속 추진
 - * '07년도중 전국 보건기관(보건소 146개소, 보건지소 등 3,181개)에 대한 실태 조사후 연차별 계획 수립·추진

③ 지방의료원을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중점 육성

- 민간부문과 차별화되는 영역에서 공공의료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육성
 - 취약지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암·심혈관·만성질환 이동 검진) 제공
 - 지역재활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설치, 만성질환 관리·예방 등 고령화에 따른 신규 의료서비스 지원
 - 산부인과·소아과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지역을 관할하는 「출산양육지원센터」 설치·운영

④ 지방 국립대학병원 특화 육성

- 9개 광역단위의 지방국립대학병원별 특화분야를 지정하여 전문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광역단위에서 완벽 제공
 - 대학병원별 내분비질환(당뇨), 류마티스, 파킨슨병, 간질환 등 특화분야를 지정하여 전문질환관리센터 설치 및 첨단장비 지원
 - 기초·임상연구, 첨단의료산업 등 특화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
- 암, 심·뇌혈관계질환센터의 기능 확충
 - 지방 국립대병원에 최첨단 의료장비를 지원하여 암 및 뇌혈관질환센터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 5대권역별 「신생아 집중치료실」 설치
 - 저출산에 대비 미숙아 집중치료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⑤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원

- 전국을 50개 중진료권으로 나누어 권역별 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 특별시·광역시인 인구 150만명당 1개소, 도지역은 인접 3개 진료권당 1개소를 특성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지역응급의료 센터 신설
 - * 경북 상주·문경 / 전북 정읍·고창·부안 등 6개 중진료권
- 심·뇌혈관 등 응급환자가 30분 이내에 전문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지원
 - 13개 지방 시도의 응급의료센터중 심혈관 8개소, 뇌혈관 17개소, 중증외상 14개소를 특화응급센터로 지정
 - 현장·이송중 응급실 수준의 의료제공을 위한 중환자용 구급차(Mobile ICU) 보급(* 13개 시도의 113개 소방서당 2대씩 226대)
 - 구급차와 119상황실, 응급의료기관간의 원격화상진료시스템 및 심전도 등 환자 화상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응급질환의 조기 감지를 위한 경보체계 구축
 - 노인, 장애인 등 응급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 방문보건 강화
 -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주민건강정보 DB를 활용한 주민 밀착형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⑥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 지역발전 정도가 낮은 낙후지역(지역 I)의 중소기업(공기업 제외)에 대해 기업 부담금 감면방안을 검토
 - * 현재 농어민·저소득층 및 도서벽지·재해지역에 10~50% 감면('06년 4,266억원)

5. 지역 선도도시의 교육·문화·의료·복지 인프라 확충

2단계 정책구상 주요 보고내용

- 혁신도시·기업도시내 학생·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 설립
- 향후 문화·예술관련 국립시설을 혁신·기업도시에 집중 배치
- 보육·노인복지·의료시설 등 집중 지원

① 지역 선도도시 우수학교 설립

- 개방형 자율학교, 특성화 전문계고의 단계적 지정 확대
 - 혁신·기업도시내 신설학교·인접지역 기존 학교를 개방형 자율학교(15개)로 우선 지정
 - 혁신도시 등 지역거점의 국립공고를 특성화 전문계고(25개)로 육성

② 문화·예술 등 국립시설 집중 배치

- 「균형발전영향평가」를 통해 문화·예술 등 국립시설을 혁신·기업도시에 배치 유도
 - 문화·예술 등 국립시설을 수도권 입지 규제 예외시설로 규정한 수도권정비법 관련 규정 정비 추진
-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문화·예술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편입하여 개발계획 등 승인

③ 보육·노인복지·의료시설 등 집중 지원

- 혁신·기업도시에 노인요양시설 우선 설치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건소 등 의료서비스 강화 지원

6. 지방의 사회개발 투자 확대

2단계 정책구상 주요 보고내용

-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의 사회개발분야 비중 확대
- '08년 지방의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시행과 연계하여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수요 측정항목의 사회개발 분야 비중을 40%로 확대
 - 지방의 인구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지자체의 사회개발 투자를 확대 유도

7. 지방재정 배분시 낙후도 반영 확대

2단계 정책구상 보고내용

- 균특 지역개발계정 배분시 낙후도 비중 확대 반영
- 매칭펀드 사업에 대한 지방분담 비율 차등화

① 균특 배분시 낙후도 비중 확대 반영

- 현행 자원배분모델 개선을 통해 낙후도 요소 반영 강화
 - '08년부터 낙후도 요소 반영 비중 확대(60% →70%)
 - '09년도 균특재원 배분시 낙후도 반영 확대방안 마련('08.4)

② 매칭펀드 사업에 대한 지방분담 비율 차등화

-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지방분담율에 차등을 두도록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지침('08.1월)에 차등방안 명시
 - 신규사업 시행 또는 현행 사업지침 개편시 매칭비율 차등 의무화

〈참고〉 지출 소요

□ 재정소요(부처요구 기준) : '08년 6,000억원 내외 신규 증액

○ 현재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와 협의 중

(억원)

세부 과제명		2008	2009	2010	2011	2012
기업 대책	1.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급	130	263	269	276	282
	2.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양성제도 도입	180	480	480	480	480
	3. 중소기업 전문 기술인력 지원					
	· 중소기업 전문인력 장려금 지원(고용기금)	149	149	149	149	149
	· 퇴직 과학자 중소기업 활용	33	33	33	33	33
	· 산업체 퇴직 고급 기술인력 활용 확대	40	40	40	40	40
	· 지방중소기업 기술인력 위탁교육	100	100	100	100	100
	· 중소기업 자체 R&D 역량 강화	50	50	50	50	50
	4. 공공임대산업단지 공급확대	500	500	500	500	500
	5. 초장기 초저가 임대산단 공급 확대	-	1,132	1,132	1,132	1,129
6. 자유무역지역	265	766	766	766	766	
7.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 확대	50	100	100	100	100	
사람 대책	1. 종업원용 임대주택지원(기금융자)	375	600	750	750	375
	2. 종업원용 전원주택지원	1	24	86	120	120
	3. 지역 초중학교를 지역 복지거점으로 육성	400	800	1,060	1,060	1,060
	4 지방우수학교 육성	81	97	103	109	116
	5. 지방대학생 장학금 지원(이공계)	40	80	120	160	160
	지방대학생 장학금 지원(인문계)	125	125	125	125	125
	6. 대학기숙사 융자(사학진흥기금)	300	300	300	300	300
	7. 지방대학 특화발전을 위한 전략적 제휴 지원	250	250	250	250	250
	8. 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	460	460	460	460	460
	9. 지역주민 건강관리체계 구축	263	347	328	340	340
	10. 지역보건소를 1차 지역 의료건강센터로 강화	72	120	120	120	120
	11. 지방의료원 육성	200	845	1,336	854	1,271
	12. 지방국립대병원 특화발전	1,285	1,931	1,767	1,785	1,485
13.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원	171	123	123	48	48	
합 계*		5,520	9,715	10,547	10,107	9,859
(기금)		(824)	(1,250)	(1,400)	(1,400)	(1,025)

* '08이후 신규증액 소요('07년 예산의 기존 예산규모 : 6,003억원)

V. 수도권 발전대책

1. 수도권 정책방향

- 수도권의 과밀 해소,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거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 발전으로 정책방향을 전환
 -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선별적 규제개선
- 수도권 발전 비전 달성을 위한 수도권 발전대책 추진
 - 수도권의 쾌적성과 매력성을 높여 삶의 질 개선
 - 지식혁신 클러스터(cluster) 활성화
 - 글로벌 시티(global city)로서의 도시발전 전략 수립·추진
- 수도권 관리방식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

2. 중점 추진과제

① 삶의 질 개선

-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역사와 문화공간을 확충
 - 녹지 활용계약제 등을 활용하여 근린공원과 녹지를 확충하고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개발 추진
 -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효창공원의 독립공원화 사업 추진
- 주택·교통시설 지속 확충
 - '06년부터 연간 900만평, 5년간 4,500만평의 공공택지 공급
 - 전철 수송분담율을 27.4%('04)에서 '20년까지 40%로 제고
 - 광역전철망 30개 노선, 782km 추가 확충계획
 - '02기준 860km인 간선도로 총연장을 '20년까지 1,811km로 확충

② 지식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살린 클러스터 활성화

* (서울시)IT·BT, (경기도) 권역별 특화산업, (인천시) 유비쿼터스-IT 등

대학 또는 대학인근에 Hi-Tech 중심의 지식산업클러스터 조성

○ 대학·기업·정부 3자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R&D, 디자인·패션, 디지털콘텐츠 등 수도권 전략산업과 연계·추진

③ 국제화 전략 추진

서울과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업무 및 국제금융지구 조성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

* (송도) 국제업무 및 IT·BT 등 첨단산업 Hub, (영종) 인천공항 중심의 항공물류 Hub, (청라) 국제금융 및 관광·레저 Hub

④ 수도권 규제의 선별 개선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 공공기관 종전부지, 노후 공업지역, 낙후지역 등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적용(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중)

미군 반환공역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시에 수도권 규제완화 적용

○ 주한미군 반환공역구역 주변지역에 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시를 환황해권 국제화중심도시로 육성

3. 수도권 관리체계 개편

행복도시 등 지방화 시책이 가시화되고 지방의 자율관리능력 향상 등 여건이 성숙한 시점에서 「계획적 관리」로 전환

○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정비방안 마련('08초) 등 사전준비 진행

VI. 향후 추진계획

- 2단계 균형발전정책 종합계획(안) 사전 보고('07.7월 중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07.7.24)
- 2단계 정책 대국민 선포식('07.7.25)
- '08년 예산·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07.9월)
- 2단계 균형발전정책 관련 입법안 국회제출('07.9월)